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다. 그래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설, 소개한다.

**방재용어**

● 정전기 (static electricity)

서로 다른 두종류의 고체 또는 고체와 액체를 접촉·분리하거나, 한 종류의 고체나 액체를 분리할 때 전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도체나 절연한 도체에 축적된 전하는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

정전기에너지는 전하량과 전압의 곱의 형태를 취하며, 불꽃방전을 할 때 가까이 가연성 증기나 가스 또는 분체가 있으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다만 방전에 소비된 에너지가 주위에 있는 물질의 최소발화에너지 이하이면 발화의 위험은 없다.

일부 생산현장에서 정전기를 대전하면 대전하는 전하의 양은 적어도 물체의 전위는 수천볼트에서 수십만볼트 정도의 높은 전위가 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전위가 되면 물체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가 공기중에 방출, 절연과피에 의해 발광과피음을 동반하며 靜放電이 발생,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방염처리

화재의 발생초기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의 약제를 무기재료 또는 유기재료 등의 물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연소하기 어렵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방염제는 독성이 없어야 하며 변질, 변색 또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이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침투성과 확대성이 강하고 유연성이 있어 방염처리가 쉬워야 하며 그 액성은 PH5내지 PH9이어야 한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층건물·극장·야마레·호텔·병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내의 커튼, 카페트, 실내장식물, 전사용 합판 등에는 방염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촉매(catalysts)

소량으로도 화학반응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자신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량의 황산은 아세트알데히드의 중합반응을 촉진시킨다.

● 억제제(inhibitors)

안정제(stabilizer)라고도 하는데 이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소량 첨가하여 급격한 반응을 억제한다. 억제제는 화학반

응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촉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촉매역할을 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반응생성물 중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있다.

● 오염물(contaminants)

어떤 물질 속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치 않는데도 투입된 것으로서, CaCl<sub>2</sub>내의 모래와 같이 어떤 오염물은 화재시 별로 위험이 없으나, 어떤 오염물질은 촉매로 작용하여 원치 않는 화학반응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 유도가열 (dielectric heating)

실제로 사용하는 절연물질은 완전한 절연능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절연물질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누설전류라 한다. 이 누설전류에 의한 가열은 열의 발생 견지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나, 절연물질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너무 얇은 절연체를 사용하게 되면 누설전류가 커져 절연물질을 가열하여 절연이 파괴되어 위험하게 된다. 고주파의 교류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 보험용어

### • 소손해면책(franchise)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어느 일정한 한도 이하의 소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를 소손해면책 또는 소손해부담보라고 한다.

이것은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일일이 보상하다 보면 보험자로 하여금 무익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보험요율의 상승을 가져와 피보험자로서도 결국은 불리하게 되므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손해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지급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있는 점으로는 사행계약에 속하며, 형식에 있어서는 도박과 비슷하나 이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보험에 의하여 이득하지 못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 보험자의 지급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보험자의 지급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을 한도로 하여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 • 손해사정 (claims adjustment)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과 그 손해액의 결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하며 「사정」이라고도 한다.

보험자는 사고발생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 때에는 신속히 손해사정을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켜 보험의 사회적 경제적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해액의 결정은 사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 열손해

화재보험보통약관 제4조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 제4항에서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손해를 면책으로 하는 이유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에 해당하는 손해이며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대처하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는 손해에 속하기 때문이다.

① 발효의 손해: 발효의 장소와 물건에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효물의 열·가스 등에 의한 손해는 물론, 그 주위의 목적의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이다.

② 자연발화: 보험의 목적의 성격에 따라 자연발화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면

책이다. 그러나 발열이 높아져서 자연발화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자연발화위험을 담보하였을 때는 물론 주위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도 부담한다.

③ 가열에 의한 손해: 목적물에 가열처리중 열온도의 상승으로 焦損이 생기는 경우는 면책이나 화재가 생긴 경우에는 부담한다.

④ 건조에 의한 손해: 일광, 炭火, 증기, 전기 등 각종 건조공정 중의 焦損, 변색, 균열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이러한 결과 화재가 생긴 경우는 보상한다.

### • 일할계산

미경과보험료 같은 것을 계산할 경우에 택하는 방법으로 미경과 기간의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경과 기간이 45일이고, 보험기간이 1년이면 그 해가 평년인 경우는  $45 / 365$ , 윤년인 경우는  $45 / 366$ 로 계산한다.

### • 포괄계약

두 가지 이상의 보험의 목적이 1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이 체결 되거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보험목적이 둘 이상의 건물이나 장소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㉞)